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8.

발 의 자 : 서삼석·윤준병·임미애
진선미·허영·박용갑
조인철·朴芝源·문금주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는 세계 김 교역 시장의 약 70%를 차지하는 등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, 종자·양식·가공·품질관리 등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·조정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관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김 산업의 육성·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,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·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김 산업 관련 교육·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

는 기관에 진흥원 추가(안 제7조 및 제8조).

나. 김 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과 연계·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0조).

다. 김 산업의 육성·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법인격 및 수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0조의2).

라. 김 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26조).

마.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과 한국김산업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(안 제28조 및 제29조).

바. 진흥원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설립위원회 구성,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 등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부칙).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위탁하여”를 “진흥원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양성”을 “직접 또는 진흥원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하여 양성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통해”를 “통하여”로, “위하여”를 “위하여 분야별”로, “지정”을 “지정하고 진흥원과 연계하여 운영”으로 한다.

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한국김산업진흥원의 설립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김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김산업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및 조사·분석·평가, 김

산업진흥구역 성과관리 지원, 산학연관 협력체계의 운영

2. 김 종자·양식·가공 기술의 실증·산업화·보급, 김산업의 스마트화·규모화 지원
 3.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 향상·표준화 지원, 식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·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·협력 지원
 4. 마른김거래소의 표준 운영체계 마련 및 성과 분석과 거래·품질 데이터의 통합 관리, 김의 생산·채고·유통·가격 등 수급의 모니터링·예측 및 정책 지원
 5.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 소비 촉진, 수출 지원 및 김 브랜드의 관리·홍보
 6. 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, 현장 컨설팅
 7. 김산업에 관한 통계조사·실태조사와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
 8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·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- 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

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⑨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김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⑩ 진흥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⑪ 진흥원의 운영·재정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따라”를 “따라 진흥원,”으로 한다.

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(벌칙) 제10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29조(과태료) ① 제10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진흥원 설립준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 전에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(설립 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)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설립위원회(이하 “설립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설립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고,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.

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.

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진흥원의 대표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교육훈련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·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	제7조(교육훈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진흥원 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에 위 탁하여-----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.	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---- ----- -----직 접 또는 진흥원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 관을 통하여 양성-----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0조(김산업 전문기관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·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	제10조(김산업 전문기관) ① --- ----- ----- ----통하여----- 위하여 분야별----- -----지정 하고 진흥원과 연계하여 운영-

② ~ ⑤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2(한국김산업진흥원의
설립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
김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김
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
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
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
을 설립한다.

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,
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
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
다.

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
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
직원을 둔다.

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
무를 수행한다.

1. 김산업 정책 및 기본계획의
수립 지원 및 조사·분석·
평가, 김산업진흥구역 성과관
리 지원, 산학연관 협력체계
의 운영

2. 김 종자·양식·가공 기술
의 실증·산업화·보급, 김산
업의 스마트화·규모화 지원

3.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 향상

· 표준화 지원, 식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·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·협력 지원

4. 마른김거래소의 표준 운영

체계 마련 및 성과 분석과 거래·품질 데이터의 통합 관리, 김의 생산·재고·유통·가격 등 수급의 모니터링·예측 및 정책 지원

5.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 소비

촉진, 수출 지원 및 김 브랜드의 관리·홍보

6. 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

교육훈련, 현장 컨설팅

7. 김산업에 관한 통계조사·

실태조사와 김산업종합정보 시스템의 운영 지원

8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

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

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

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·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⑨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김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⑩ 진흥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⑪ 진흥원의 운영·재정 및 정

제2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(생략)

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생산자단체,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_____

_____ 따라 진흥원,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벌칙) 제10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29조(과태료) ① 제10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금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
산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